

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

2015. 1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 1.12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 1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 (2015. 1.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창 수 주택과장

가. 제안이유

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(마포구 고시 제 2014-5호)되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구역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
- 면 적 : 38,809㎡

○ 추진경위

- 2003.11.18 : 아현뉴타운지구 지정(시 고시 제2003-372호)
- 2004.12.30 :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승인
(시 공고 제2004-1431호)
- 2007.11.20 : 추진위원회 승인(170명/328명 : 동의율 51.83%)
- 2010.05.06 : 정비구역 지정(서울시 고시 제2010-169호)
- 2013.12.06 :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 접수(토지등 소유자 174명)
- 2014.01.16 : 추진위원회 해산(마포구 고시 제2014-5호)
※ 토지 등 소유자 327명 중 174명 해산동의(53.2%)로 추진위원회 취소
- 2014.07.31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구역해제)을 위한 용역계약
- 2014.09.05 : 정비구역해제 민원 제출
- 2014.09.18 :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
※ 공람기간 : 2014. 9.18 ~ 2014. 10.17

다. 영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

1)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해제)

구분	구역 번호	위치	면적	용적률	층수	건폐율	추진 단계	사업시행 방식	정비유형	비고
기정	영리4	영리동 9번지 일대	3.9ha (38,809㎡)	190%	12층이하	50%	2	주택재개발 사업	전면개발	
변경	해제									

2)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내용(해제)

구역명	구역면적(㎡)	택지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	건축계획
			공원	도로	
영리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38,809	28,373	3,668	6,768	- 9개동 626세대 - 용적률 : 239.65% - 평균층수 16층

3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·감	변 경		
계		38,809	-	38,809	100	
주 거 지 역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-	증)38,809	38,809	100	
	제2종일반주거지역	38,809	감)38,809	-	-	

4) 정비계획 (해제)

가) 토지이용계획

결정구분	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기 정	합 계		38,809	100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9,489	24.5	기부채납 : 4,998.3㎡
		공 원	3,242	8.4	
		도 로	6,247	16.1	
	택 지	소 계	29,320	75.5	
		택 지1	28,247.7	72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	택 지2	1,072.3	2.7	종교시설
변 경	합 계		38,809	100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9,489	24.5	
		공 원	3,242	8.4	해제
		도 로	6,247	16.1	기존 기반시설로 환원
	택 지	소 계	29,320	75.5	
		택 지1	28,247.7	72.8	해제
		택 지2	1,072.3	2.7	해제

나)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 설치계획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※ () : 임시노선번호

결정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형태	연장(m)	위치	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점	종점		
기정	중로	1	427	20~23	국지도로	일반도로	298	영리동 14-1	대흥동 2-57	서울시고시 제2007-448호 (2007.12.6)	변경
변경	중로	1	427	20	"	"	296	영리동 14-1	대흥동 2-57		
폐지	중로	2	(1)	15	"	"	213	대흥동 2-7	대흥동 3-29		
폐지	소로	1	(1)	10	"	"	172	영리동 8-80	영리동 486		
폐지	소로	3	263	6	"	"	97	영리동 10-71	영리동 10-81		환원
환원	소로	3	263	6	"	"	97	영리동 10-71	영리동 10-81		

(2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결정구분	시설의 종류		위치	면적(㎡)	비고
	명칭	세분류			
기정	공원	소공원	영리동 9-120번지 일대	3,242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 폐지
폐지	공원	소공원	영리동 9-120번지 일대	3,242	

다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

(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	합계	춘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이주	
기정	영리4주택재개발 정비구역	38,809	영리동 9번지일대	250			250		
변경	해 제								

(2) 건축시설계획

구분	획지구분		위치	주요 용도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층수		
	명칭	면적(㎡)								
기 정	신규	택지 1	28,247.7	영리동 9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110,000 이하 ※106,925.66	30 이하 ※26.66	232.1 이하 ※231.02	25층이하 (평균16층이하) ※평균 15.5층	
	신규	택지 2	1,072.3	영리동 488-7번지 일대	교회	관계법령에 따름				
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총세대수 : 644세대(분양 534세대, 임대 110세대) - 85㎡ 이하 : 577세대(89.6%) - 85㎡ 초과 : 67세대(10.4%) 						
				구분 (전용면적)	계		분양		임대	
					세대	비율(%)	세대	비율(%)	세대	비율(%)
				합 계	644	100	534	82.92	110	17.08
				60㎡이하	283	43.94	173	26.86	110	17.08
				60㎡~85㎡이하	294	45.65	294	45.65		
	85㎡초과	67	10.41	67	10.41					
	임대주택 건립비율			기준	40㎡이하 (40~50%)	40㎡~50㎡이하 (40~50%)	50㎡~60㎡이하 (10~20%)			
계획				48세대(43.64%)	50세대(45.45%)	12세대(10.91%)				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(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) 평균층수 16층이하 적용 ·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(건축법 시행령 제85조 제5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원 남측으로 인접한 아파트 							
변 경			해 제							

라. 주민 공람공고 결과

- 근 거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3 제1항, 제2항
- 게재구분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
- 공고일자 : 2014. 9.18
 - ※ 열람기간 : 2014. 9.18 ~ 2014. 10.17
- 열람의견 : 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구역해제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

-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27명 중 174명이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(동의율 53.2%)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가 해산(승인 취소) 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추진

바. 향후 추진절차

- 정비구역 해제 요청(구→시)
-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정비구역 해제여부 결정 및 고시
 - ※ 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(마포구 고시 제 2014-5호)되어 같은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- 염리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3년 11월 18일 아현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4년 만인 2007년 11월 20일에 과반수 주민 동의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, 3년후 2010년 5월 6일에 구역지정된 지역임.
-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찬반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전국의 정비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으며, 우리구의 정비사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음.

- 2011년말 국회에서 정비사업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구역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영리4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 실태조사를 거쳐 과반수 주민 동의로 지난 2014년 1월 16일 추진위원회가 해산(고시)됨.
-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구역해제)을 위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비를 확보 후 2014년 7월 31일 용역발주 진행 중에 있음.
- 당해 정비구역은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먼저 해제하고,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서울시로 요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